

2020년도

보육사업안내

2020.



보건복지부

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

가. 지원 기준

1) 지원 대상

-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/통합 어린이집
- ② 평가인증 유지(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, B등급), 영아반* 2개 이상 운영, 정원충족률 70% 이상인 어린이집
 - 다만,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(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, B등급), 영·유아반 2개 이상, 정원충족률 70% 이상일 때 지원 가능
 - * (영아반) 0세·1세·2세아반, 혼합반(0·1세), 혼합반(1·2세), 시간제보육반
 - ※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
(예시: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(5명) 운영 시 ⇒ 정원 75명으로 간주)

2) 지원 제외 대상

-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
 -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(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)

3) 지원 인원

- ‘1) 지원 대상’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, 아래의 ①~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씩 추가 지원 가능(1개소 당 지원 인원 상한 없음)
 - ① 장애아 현원 3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
 - ② 영아반 3개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(평가인증 유지(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, B등급), 정원충족률 70% 이상)

┃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(예시) ┃

지원인원	1명	2명	3명	4명	5명	비고
장애아 현원(명)	3~5	6~8	9~11	12~14	15~17	• 기준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도 가능 • 반 수 산정 시, 유아반은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
영·유아반 수(개)	2~4	5~7	8~10	11~13	14~16	

나. 세부기준

- 장애아 전문/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
- 시·도지사(또는 시·군·구청장)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이 '가. 지원기준'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
- 선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지원 가능
 - 다만, 지원 중 평가제 평가 결과 C, D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이 속한 다음 월부터 지원 중단(어린이집에서 부담)
-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
 - 지역 실정에 따라 '가. 지원기준' 내 우선순위 마련하여 운영 가능
 - '가. 지원기준'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, 영아반 2개 이상 운영, 평가인증 유지(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, B등급) 기준 충족 시 정원충족률 70% 미만도 선정 가능

다.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

- (근로조건) 보조교사와 임면권자(대표자 또는 원장) 간 근로계약 체결
 - 1일 4시간(월~금, 주 20시간) 근무 기준 지원
 -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(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)
 -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,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(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)
- (지원단가) '20년 1월부터 적용
 - 1일 4시간(월~금, 주 20시간) 근무 시, 월 1,002천원* 지원
 - *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/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, 퇴직적립금 등의 30%는 정부 지원,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
 - * 보조교사 인건비는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,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(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. 30.기준,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. 31.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)

- (자격) 보육교사, 특수교사
 - 단, 장애아 전문/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‘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’ 또는 ‘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’ 우선 채용
 - * (참고) Ⅲ.보육교직원 자격 > 4.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
 - 채용 곤란 시 ‘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’를 채용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
- (업무내용)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(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)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
 - 담임교사(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)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,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 업무 대행 가능

라. 사업기간: ’20년 3월 ~ ’21년 2월


마. 지원 절차

- (지원 대상 선정) 어린이집에서는 시·군·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, 시·군·구청장(또는 시·도지사)은 ‘가. 지원기준’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
 - ’20년에 선정·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지(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, B등급) 등에 미달하더라도 ‘지원 제외 대상’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(’20. 3.~’21. 2.)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
 -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
 - 보조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,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
- (채용 및 임면보고)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, 시·군·구청에 임면보고 실시
 - 다만,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(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)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

- (임면승인) 시·군·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
 - ※ 채용·임면에 관한 절차, 구비서류(채용신체검사서, 성범죄경력조회서 등) 등은 「보육사업안내」 준수
- (인건비 신청 및 지원)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, 시·군·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
- (인건비 지급) 시·군·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,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
 -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,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
 - *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
 -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·군·구별 지급기간을 조정,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

바. 유의사항

-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·점검
 -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(어린이집에서 부담)하며,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
 -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 (예시) '19. 1월~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, '20년, '21년은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

 예시 ...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

-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
- 담임교사의 보육·놀이·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·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
- 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

-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, 근로계약체결, 복무관리,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보육사업안내」 규정 준수

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

가. 지원 대상 어린이집

-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
 -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
 -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% 기준 충족
 - 영아반 3명(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), 유아반 8명. 단,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
 - * (기준)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%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
 -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
 -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, 영아반 월 30시간(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),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
 - * (기준)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
 -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

나.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

-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
 -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(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)

다. 지원 인원

-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

라.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

-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책임지고 연장보육을 계획·운영하고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
-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임면권자(대표자 또는 원장)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(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)

-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,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

마. 지원 단가

- 1일 4시간(월~금, 주 20시간) 근무 기준, 월 1,002천원 및 전담수당 120천원 지원
 *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, 수당형 야간연장 보육교사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
 *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/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, 퇴직적립금 등의 30%는 정부 지원,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
 *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,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(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. 30. 기준,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. 31.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)

바. 자격 조건

- 보육교사, 특수교사

사. 사업기간

- 2020년 3월 ~ 2021년 2월

아. 지원 절차

- (지원대상 선정) 어린이집에서는 시·군·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, 시·군·구청장(또는 시·도지사)은 ‘가. 지원 대상 어린이집’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
 - 연장반 정원 50% 이상 충족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되, 시·군·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 - 다만, 학기 초(‘20년 3~4월)는 ‘가. 지원 대상 어린이집’의 인건비 지원 기준 중 ②, ③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‘나.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’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원 가능
 -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2개월까지 인건비 지원(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)
- (채용 및 임면 등) 채용 절차, 임면,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

자. 유의사항

-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임교사가 예외적으로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음
 -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(다만,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)
 - 농어촌 지역인 경우
 - 신규채용, 보조교사 겸임,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
-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(19:30)까지 근무해야 함
-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·점검
-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
- 결격사유 확인 등 입면 보고, 근로계약체결, 복무관리,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보육사업안내」 규정 준수